

심 사 보 고 서

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심사보고서

의안 번호	489
----------	-----

2024. 1. 30.(화)
건설환경소방위원회

1. 심사경과

가. 발 의 자 : 박지현 의원 등 7인

나. 발의일자 : 2024년 1월 8일

다. 회부일자 : 2024년 1월 9일

라. 상정일자 : 2024년 1월 25일

- 제41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2차 건설환경소방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2. 제안 설명 요지 (제안설명자 : 박지현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기여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를 규정함(안 제1조 및 안 제2조)
-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및 환경오염 방지에 관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(안 제3조)

-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4조)
-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5조)
-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하여 규정함(안 제6조)

3. 검토보고 요지(김홍식 수석전문위원)

가. 조례제정의 필요성

- 충청북도가 관할하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지원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농업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임으로 그 필요성이 인정됨.

나. 조례내용의 정당성 및 법 적합성

- 본 조례안은 「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(이하 “친환경농어업법”）」 제9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는 폐농업자재로 인해 발생하는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시책을 적극 추진해야 하기에 조례로 제정함이 정당함.
- 「지방자치법」 제13조제2항제3호 등에 따라 농업자재 관리와 자연환경보전 및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자치사무 이행 관련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이 없어 상위법령 취지에 있어서도 적합함.
- 조례 제정을 통해 추계된 소요예산은 매년 총 33억원 가량으로, 국비 등의 재원조달 방안이 강구되어 있어 농약용기류, 농촌폐비닐 등의 영농폐기물을 수거 처리하는 예산지원도 특별한 문제가 없음.
- 조문의 주요내용을 보면,
 - 안 제1조는 조례의 목적을 규정함.
 - 안 제2조는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을 규정함.
 - 안 제3조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및 환경오염 방지를 위한 도지사의 책무를 규정함.

- 안 제4조는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5조는 영농폐기물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- 안 제6조는 행·재정적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.

○ 조례안 예고('24. 1. 11. ~ 1. 17.)를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하였음.

다. 조례내용의 기술적인 사항

- 본 조례는 '24년 1월 기준 8개 시·도가 제정·시행 중이며, 문제된 사항이 없음.
- 제정안은 총 6개의 조문이며, 조문상의 내용과 구성은 입법담당이 검토하여 조문 상호 간에 상충되는 내용이 없도록 하였고, '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'에 맞추어 간결하고 알기 쉽게 표현하였음.

4. 검토의견

- 본 조례안을 검토한 결과, 「친환경농어업법」 등에 근거하여 영농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지역농업 발전과 환경오염 방지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의 필요에 따라 타당하다고 판단됨.
- 농약용기류, 농촌폐비닐, 폐반사필름 등의 영농폐기물을 방치하게 되면 토양 및 수질오염을 유발하고, 불법 소각하는 경우 산불과 대기오염의 원인이 됨으로써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은 지역농업발전과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매우 중요함, 따라서 영농폐기물의 수거 지원을 위한 본 조례안의 제정은 적절한 조치로 사료됨.
- 다만, 충청북도는 영농폐기물에 대한 배출 및 처리상황을 규정된 영농폐기물 수거 등의 지원계획과 실태조사를 통해 관찰구역이 적정하게 처리하는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여야 하고, 영농인과 사업자(영농폐기물 수거자, 운반업자)의 영농폐기물 수거에 관한 의식 제고와 발생 억

제의 중요성 이해에 대한 교육에도 노력하여 제정 조례의 실효성을 높여야 할 것임.

5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6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7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8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9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10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○ 「충청북도 영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」 등

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

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영농폐기물의 적정한 수거 및 처리 등을 지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지역의 농업환경 보전과 개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

1. “영농폐기물”이란 농촌의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폐비닐·농약빈병·폐부직포·폐반사필름 등의 폐농업자재를 말한다.
2. “영농폐기물 수거자”란 충청북도 내에서 영농폐기물을 수거하는 개인, 단체 및 운반업자를 말한다.
3. “운반업자”란 영농폐기물을 배출지에서 직접 수거하여 운반하는 사람(「폐기물관리법」 제46조제1항에 따른 폐기물처리 신고자에 한정한다)을 말한다.

제3조(도지사의 책무 등) ① 충청북도지사(이하 “도지사”라 한다)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의 환경오염을 방지하고,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충청북도민과 영농폐기물 수거자 및 운반업자는 영농폐기물 수거를 지원하기 위하여 충청북도에서 추진하는 시책에 협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

제4조(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 수립) ①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을 방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수거 등 지원계획(이하 “지원계획”이라 한다)을 매년 수립하여야 한다.

1. 영농폐기물 수거 방안
2. 영농폐기물 수거 기반시설 확충
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

4. 그 밖에 도지사가 정하는 사항

② 도지사는 지원계획 수립을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·군수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「순환경제사회 전환 촉진법」 제11조제2항에 따라 수립하는 충청북도 순환경제 시행계획에 제1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경우에는 지원계획이 수립된 것으로 본다.

제5조(영농폐기물의 실태조사)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영농폐기물 실태조사(이하 “실태조사”라 한다)를 실시할 수 있다.

1. 영농폐기물 발생량

2. 영농폐기물 수거 현황

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 현황

4. 그 밖에 영농폐기물로 인한 환경오염 발생 방지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

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시장·군수 및 관계 기관 등에게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.

③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효율적으로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문성을 갖춘 연구기관·법인 또는 단체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.

제6조(행정적·재정적 지원)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·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.

1. 영농폐기물 수거보상비의 지원

2. 영농폐기물 수거와 집하시설 설치 지원

3. 영농폐기물 처리와 재활용시설 설치 지원

4. 영농폐기물 관련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해 필요한 시설 지원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관계법령

【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·지원에 관한 법률】

제9조(농어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)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약, 비료, 가축분뇨, 폐농어업자재 및 폐수 등 농어업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약의 안전사용기준 및 잔류허용기준 준수, 비료의 작물별 살포기준량 준수, 가축분뇨의 방류수 수질기준 준수, 폐농어업자재의 투기(投棄) 방지 및 폐수의 무단 방류 방지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제10조(농어업 자원 보전 및 환경 개선)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지, 농어업 용수, 대기 등 농어업 자원을 보전하고 토양 개량, 수질 개선 등 농어업 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농경지 개량, 농어업 용수 오염 방지, 온실가스 발생 최소화 등의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할 때 「토양환경보전법」 제4조의2와 제16조 및 「환경정책기본법」 제12조에 따른 기준을 적용한다.

【폐기물관리법】

제4조(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) ① 특별자치시장, 특별자치도지사, 시장·군수·구청장(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. 이하 같다)은 관할 구역의 폐기물의 배출 및 처리상황을 파악하여 폐기물이 적정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·운영하여야 하며, 폐기물의 처리방법의 개선 및 관계인의 자질 향상으로 폐기물 처리사업을 능률적으로 수행하는 한편, 주민과 사업자의 청소 의식 함양과 폐기물 발생 억제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.

<개정 2007. 8. 3., 2010. 7. 23., 2013. 7. 16.>

② 특별시장·광역시장·도지사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이 제1항에 따른 책무를 충실하게 하도록 기술적·재정적 지원을 하고, 그 관할 구역의 폐기물 처리사업에 대한 조정을 하여야 한다. <개정 2007. 8. 3.>

③ ~ ④(생략)

충청북도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

1. 사업개요

- 도내 영농활동으로 발생된 영농폐기물의 수거 등에 필요한 사항을 지원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고자 함

2. 비용 발생 요인

- 영농활동 중 발생된 영농폐기물의 수거비 지원

3. 관련조문

-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
 - 도지사는 영농폐기물로 인한 농촌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업환경 보호와 개선을 위한 시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.

4. 비용 추계결과

가. 추계의 전제

- 추계기간은 2024년부터 2028년 5년간으로 함
- 추계기간(5년간)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
- 물가상승, 인건비 상승 등은 별도 반영하지 아니함
- 조례안 제3조(도지사의 책무)에 의거 영농폐기물 수거 지원에 대한 비용 추계

나. 추계 결과: 16,614,450천원

- 연 사업당 최대 3,322,890천원 소요예상
 - 농약용기류 수거보상(대응): 596,790천원
 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: 2,256,100천원
 -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: 340,000천원

-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: 60,000천원
-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지원사업: 70,000천원

다. 재원조달방안 : 국비, 도비, 시·군비, 기타 등

- 농약용기류 수거보상(대응): 국 30%, 도 30%, 한국작물보호협회 40%
-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: 국비 인센티브(20원/kg), 도 20%, 시·군 80%
- 농촌폐비닐 공동집하장: 국 30%, 시·군 70%
- 농약빈병수거함 설치지원사업: 도 30%, 시·군 70%
- 영농폐기물 수거·처리 지원사업: 도 30%, 시·군 70%

5. 연도별 비용추계서 : 붙임

